

제142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상정
(조례 2건)

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07 ~ 58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7 ~ 59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58	제출일자	2007. 11. 16.
		제출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2008. 1.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역모기지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7~10인승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7년 만료함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감면기간을 2009년까지 연장하며,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우리 군과 관련없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함(안 제5조의2)
- 나.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6조의2)
 -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을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으로 함
 - 주택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함
- 다.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이관(안 제9조의2)
 - 「거창군세조례」 제32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를 이관함
 - 토지분 재산세 경감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확대함
- 라.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15조의2)
 - 전방조정자동차 : 승합차 세율로 과세하던 것을 승용차로 과세하면서 2008년에는 66/100을 경감하고, 2009년에는 33/100을 경감함
 - 전방조정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
2008년에는 33/100을 경감하고, 2009년에는 16/100을 경감함
- 마.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
 -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 ⇒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안 제7조제6호)
 - 「과학관육성법」 ⇒ 「과학관육성법」 제6조(안 제7조제7호)
 -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 제42조제1항
⇒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 제47조제1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 「거창군세조례」 제32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 「도서관법」 제31조, 제40조
- 「과학관육성법」 제6조
-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4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
 - (가) 기간 : 2007. 10. 17. ~ 11. 5.(20일간)
 - (나) 제출의견 :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제28조제1항·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법”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7조 본문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각 호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제6호 중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으로 하며, 제7호 중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를 “「과학관육성법」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제1항 제1호 중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시·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를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와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42조제1항에 의하여”를 “제4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9조의2(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판·판매 및 그 부속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5조의2 본문 중 “2007년 12월 31일까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제1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를 “2008년 12월 31일 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조제2호 중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5조의3 중 “「지방세법 시행령」”을 “영”으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부동산”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하고,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8조 중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한다.

제23조제3호 중 “(가)목 및 (나)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제 4호 중 “(나)목 및 (다)목”을 “나목 및 다목”으로 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④(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u></p> <p>「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삭 제></p>
<p><u>제6조의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u>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이하인 주택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p><u>제6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u></p> <p>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p><u>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u></p> <p>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p>	<p><u>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u></p> <p>----- 각 호에서 정하는-----</p> <p>-----</p> <p>-----</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면제한 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 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 5. (생 략)</p> <p>6.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p> <p>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p>	<p>-----</p> <p>-----</p> <p>-----</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p> <p>7. 「과학관육성법」 제6조에 따라-----</p>
<p>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 한다.</p> <p>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시·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p> <p>2. ~ 3. (생 략)</p> <p>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p> <p>-----</p> <p>-----.</p> <p>1.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와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p> <p>2. ~ 3. (현행과 같음)</p> <p>② -----제47조제1항에 따라-----</p> <p>-----</p> <p>-----.</p>
<p><신 설></p>	<p>제9조의2(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p> <p>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p>

신 · 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5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u>2007년 12월 31일까지</u>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p> <p>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p> <p>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 ----- ----- ----- --- 법 ----- ----- -----.</p> <p>제15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 ----- ----- ----- ----- ----- ----- ----- ----- ---<u>2009년 12월 31일까지</u> ----- ----- -----.</p> <p>1. ----- ----- ----- <u>2008년 12월 31일까지</u>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u>2009년 12월 31일까지</u>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p> <p>2. ----- <u>2008년 12월 31일까지</u>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u>2009년 12월 31일까지</u>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 行	개 정 안
<p>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u>부동산</u>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p> <p>1. ~ 2. (생 략)</p>	<p>-----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각 호의 어느 하나 -----.</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u>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u>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 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 -----. -----.</p>
<p>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생 략)</p> <p>1. ~ 2. (생 략)</p> <p>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p>	<p>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가목 및 나목----- ----- -----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p> <p>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p>	<p>-----</p> <p>-----</p> <p>-----</p> <p>-----</p> <p>-----.</p> <p>4. -----</p> <p>--- 나목 및 다목 -----</p> <p>-----</p> <p>-----</p> <p>-----</p> <p>-----</p> <p>-----</p> <p>-----</p> <p>-----.</p>
<p>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p> <p>②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p>	<p>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 -----</p> <p>-----</p> <p>-----</p> <p>-----</p> <p>-----법</p> <p>-----</p> <p>-----</p> <p>-----</p> <p>-----</p> <p>-----</p> <p>-----법</p> <p>-----</p> <p>-----</p> <p>-----법</p> <p>-----</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2007. 8. 1)</u></p> <p><u>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u></p> <p><u>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u></p>	<p>----- ----- ----- -----.</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p> <p><u>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p> <p><u>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u></p> <p><u>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u></p> <p><u>④(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p> <p><u>제32조를 삭제한다.</u></p>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59	제출연월일	2007. 11. 16.
		제출자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배출과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근거법 조문 변경

- 「폐기물관리법」

- 제13조 ⇒ 제14조(안 제5조제2항·제6조제1항·제12조제1항·제21조제1항)
- 제26조 ⇒ 제25조(안 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부터3항)
- 제63조 ⇒ 제68조(안 제8조제2항·제11조제1항·제24조)

나.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항 신설(안 제11조제5항)

○ 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일정비율의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직선거법」 제112조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나. 예산조치 : 20,000천원(2007년 제1회 추경예산확보)

다. 그 밖에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간 : 2007. 10. 18. ~ 11. 06.(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13조 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13조”를 “법 제14조”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4조 중 “법 제63조”를 “법 제68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63조”를 “법 제68조”로 하고, 같은 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일정비율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2항” 중 “법 제14조제2항”으로, “법 제26조”를 “법 제25조”로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 중 “법 제26조”를 “법 제25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 중 “법 제63조”를 “법 제68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적용범위) ① (생 략)</p> <p>②이 조례는 <u>법 제13조 제1항</u>에 의하여 군수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외의 군전역에 적용한다.</p> <p>③ (생 략)</p>	<p>제5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 -----법 제14조제1항 -----</p> <p>-----</p> <p>-----.</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 등)</p> <p>①군수는 <u>법 제13조</u>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 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6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 등)</p> <p>① -----법 제14조 -----</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p> <p>① (생 략)</p> <p>②군수는 폐기물 배출자가 제7조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u>법 제63조</u>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당해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p>	<p>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법 제68조</p> <p>-----</p> <p>-----</p> <p>-----</p> <p>-----</p> <p>-.</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p> <p>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u>법 제63조</u>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② ~ ④ (생 략)</p> <p><u><신 설></u></p>	<p>제11조(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p> <p>① ----- ----- -----<u>법 제68조</u>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일정비율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p> <p>① 군수는 <u>법 제13조제2항</u>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u>법 제26조</u>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 ~ ④ (생 략)</p>	<p>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p> <p>① -----<u>법 제14조제2항</u> ----- ----- <u>법 제25조</u>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3조(폐기물처리업 허가)</p> <p>① <u>법 제26조</u>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폐기물 처리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제13조(폐기물처리업 허가)</p> <p>① <u>법 제25조</u> ----- ----- ----- -----.</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 군수는 <u>법 제26조</u>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폐기물관리구역내의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 처리업자의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허가기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군수는 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법 제26조</u>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시설 등을 추가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u>법 제13조제3항</u>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 4. (생 략) ② (생 략)</p>	<p>② ----- <u>법 제25조</u> ----- ----- ----- ----- ----- ----- ----- ----- -----. ③ ----- ----- <u>법 제25조</u> ----- ----- ----- ----- ----- -----. 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u>법 제14조제3항</u>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u>법 제63조</u> 및 「자원의 절약과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 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 7" 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u>법 제68조</u> ----- ----- ----- ----- ----- ----- -----. -----.